
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

1. 제안이유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4(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)에서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은 “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”으로 되어 있는데, 기준을 완화하여 전용공간 마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.

또한, 같은 영에서 정한 위탁·지정 기관 중 “국토연구원”이 「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개정('20.11.20)에 따라 “건축공간연구원”으로 명칭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관련 규제완화(안 제18조의4제1항3호 개정)

- 1)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3호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규정하고 있는데, 전용공간 마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갖춘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.

나. 「건축공간연구원」 명칭변경 반영

- 1) 시행령 제7조(건축물 에너지·온실가스 정보 체계의 운영 위탁), 제15조(녹색건축센터의 지정), 제18조의2(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)에서 규정한 기관 중 “국토연구원”을 “건축공간연구원”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1. 30. ~ 2021. 1. 10.)

3) 행정규제 : 국무조정실 사전 협의 결과 규제심사

대상이 없음을 확인함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국토연구원(이하 “국토연구원”)을 “건축공간연구원(이하 “건축공간연구원”)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건축공간연구원

제18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건축공간연구원

제18조의4제1항제3호 중 “전용되는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건축물 에너지·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) 법 제10조제8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.	제7조(건축물 에너지·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<u>국토연구원</u> (이하 “국토연구원”이라 한다)	1. ----- ----- ----- <u>건축공간연구</u> <u>구원</u> (이하 “ <u>건축공간연구</u> ”- -----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)	제15조(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)
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국토연구원</u>	1. <u>건축공간연구원</u>
2. ~ 6. (생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2(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)	제18조의2(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)

의 지정) ① (생 략)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 1. 국토연구원 2. ~ 6. (생 략) ③ (생 략) 제18조의4(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) ①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· 2. (생 략) 3. 시설기준: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<u>전용되는</u> 사무실 등 사무공간 ② (생 략)	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. 1. 건축공간연구원 2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18조의4(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) ①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 <u>필요한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